

---

# 2019년 6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2019.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 2019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3. 7.(목) 10:00 ~ 11:30
-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정호경, 심영섭, 이유진, 최진수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4건
  - (2019-25) 서울디지털재단 특별점검 결과보고
  - (2018-26) (2018. 8월 이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통보받은 처분 죄명 및 통보결과에 따른 징계수위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19-25) : 기각
  - (2019-26) : 기각

## 【 개 회 】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위원으로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청구인 이의신청 2건입니다. 위원님 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7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안번호 2019-25 이의신청 】

안건명 : 서울디지털재단 특별점검 결과보고

<○○○ 위원>

○ 의안번호 제2019-25호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저는 스마트도시담당관 ○○○라고 합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9-25호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서울디지털재단 특별점검 결과보고’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문서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이미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서울시도 대응했던 사안이며, 해당 점검 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부당하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

○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이 청구한 것은 투자창업과 2건, 스마트도시담당관 1건, 총 3건이고 문서는 하나죠?

<○○○ 과장>

○ 네, 맞습니다. 같은 문서입니다.

<○○○ 위원>

○ 그런데 지금 특별 점검한 내용들을 감사위원회에서 다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겁니까?

<○○○ ○○>

○ 다 하고 있고요, 일단 감사는 2월 27일 끝났습니다.

〈○○○ 위원〉

○ 그럼 결과가 곧 공개되겠네요?

〈○○○ ○○〉

○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피드백 받은 것은 없고요. 디지털재단에 대한 감사가 작년 연말부터 전방위적으로 진행은 됐고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결과가 전자문서상으로는 오고 간 것은 없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만 결과물들이 있었고, 다만 디지털창업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한 이 결과 문서만 전자문서에 등재되어 있는 겁니다.

○ 그러다 보니까 문서를 보신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 했는데, 아무튼 이 건은 저희가 언제 최종 결과가 올 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회신을 청구인에게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MBC 쪽에 나왔던 ‘바로간다’라는 보도도 기사내용하고 내용하고는 조금은 다른 건이기는 합니다.

〈○○○ 위원〉

○ 보내주신 자료는 다 검토했고, MBC뉴스데스크의 ‘바로간다’도 시청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감사결과를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 ○○〉

○ 네, 맞습니다.

〈○○○ 위원〉

○ 거기에는 지금 이 내용은 아직 등재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

○ 네.

<○○○ 위원>

○ 공개 여부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것이니까 아직 모르시겠네요.

<○○○ ○○>

○ 네.

<○○○ 위원>

○ 그러면 이 특별점검내용은 어느 부서에서 한 겁니까?

<○○○ ○○>

○ 디지털창업과에서 했고요, 저희 부서로 1월 1일자로 업무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

○ 보면 관련된 부서가 많더라고요.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디지털창업과, 그다음에 투자창업과,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담당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

○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 비리에 대한 것이나 업무 성격에 따라서 조사과나 감사과에서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디지털창업과와 투자창업과는 1월 1일 조직이 바뀌었지만 같은 과고요. 디지털창업과에서는 디지털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담당했던 업무 중에 웹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도시데이터연구소에 관한 업무, 2가지만 관련된 부서인 디지털

창업과에서 감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청구인은 웹비즈니스센터와 도시데이터연구소에 관한 건만 공개 요청을 한 것입니다.

<○○○ 위원>

○ 지금 이 청구인이 요구한 것은 결국 디지털창업과에서 생산한 특별점검보고서잖아요?

<○○○ ○○>

○ 네, 맞습니다.

<○○○ 위원>

○ 여기 마지막 11쪽에 보니까 재정상 조치는 끝난 것이고요, 그렇죠?

<○○○ ○○>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다음 행정상 조치 중에서도 1번에서 6번 사항까지 다 끝난 사안이잖아요?

<○○○ ○○>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 7번, 8번 웹비즈니스센터에 관한 것만 감사위원회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 ○○>

- 감사위원회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결과가 온 것은 아직은 없고요.

<○○○ 위원>

- 이게 공개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나요?

<○○○ ○○>

-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재단 쪽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징계 조치나 환수부분들이 이미 재단 쪽에서 정상화하기 위해 나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추가보도가 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면 다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막연한 추측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재단이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잖아요.
- 얼마 안 됐는데 지금까지 결국은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이 그런 문제로 퇴임하시게 됐고, 그리고 지금 도시 데이터사이언스연구소의 지원사업도 감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그다음 웹비즈니스센터는 또 용역사업을 정확하게 원래 원칙대로 하지 않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요약돼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그것이 이미 제 생각에는 MBC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이 이 중에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고요.
- 그리고 청구인은 이것을 어쨌든 취재해서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의 구체적인 문서를 가지고 달라고 하는 것은 제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 굳이 이 결과보고를 공개 안 하고 비공개로 두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막연하게 공개가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공개하고 재단이 그 모든 문제를 털어버리고 정상화되도록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그러니까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은 MBC ‘바로간다’에서는 이 도데사하고 웹비즈니스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별건이기는 합니다. 다시 재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새롭게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다만 저희가 관리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지금 도데사나 웹비즈니스센터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그런 염려는 있는 것이고요.

<○○○ 위원>

- 5쪽의 ‘2017년 1차년도 교육과정 개발비 지출내역’, 이 5개의 사항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고 전혀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유예를 준다 하더라도 어쨌든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는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재단의 문제가 아닙

니다.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간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언론 보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한다라는 것이 맞는지요.

- 여기서 핵심은 이 두 개의 부서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돌아가는 게 부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처음 설립되어 지금 내부가 시끄럽다 보니 그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바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제대로 감수를 못한 것이잖아요.

<○○○ ○○>

- 그렇죠.

<○○○ 위원>

-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공개를 하든 공개를 하든 어차피 그 업무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 ○○>

- 그렇죠.

<○○○ 위원>

- 그런데 공개하는 것보다 비공개한다고 더 잘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파트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는 또 다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었는데 결국은 후속보도가 이루어져서 그것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신다. 그것이 지금 주요사유인 것이죠?

<000 00>

○ 네, 그렇습니다.

<000 위원>

○ 5호 사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7호 사유를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도 단체 경영·영업상 비밀로 구성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그나마 핵심적으로는 우려하는 사항은 그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000 00>

○ 네. 왜냐하면 도데사나 웹비즈니스센터를 수탁 받아서 업무를 처리했던 기관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적된 사항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뭔가를 소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상대의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3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을 갖고 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000 위원>

○ 내부적인 결과보고뿐만 아니라 조치까지도 완전히 확정된 겁니까?

<000 00>

○ 조치까지는 아직, 이것이 디지털창업과에서 감사한 것을 갖고 감사위원회에 갖습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전자문서로 이게 저희들한테 수신이 된 겁니다.

<000 위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없었잖아요.

<○○○ ○○>

○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위원>

○ 내부적인 점검 결과보고만 감사가 끝나서 감사위원회에 보냈지 감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감사 중인 사건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는 봐야되는 거지요?

<○○○ ○○>

○ 2월 27일 날 감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너희들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감사 중이죠.

<○○○ 위원>

○ 센터에 아직 감사위원회에서 결과 통보를 안 했죠?

<○○○ ○○>

○ 네, 안 한 겁니다.

<○○○ 위원>

○ 서울시 내부규정에 의하면 결과 통보하고 한 달 있다가 이의가 없을 때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

○ 네, 맞습니다. 그 과정이라 저희는 감사 중이라고 보는 겁니다.

〈○○○ 위원〉

- 아직 그 시기는 안 됐고,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가 지나도 공개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 위원〉

- 또 감사위원회의 의견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 ○○〉

- 네, 맞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 위원〉

- 여기에 우리 일반규정으로 서울시 감사계획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 감사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여기는 특별히 특별감사는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이죠?

〈간사〉

- 네, 없습니다.

〈○○○ 위원〉

- 위원님들 더 추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과장〉

- 네,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위원〉

- 민감한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련된 연구자들과 기관들이 이 문서가 공개됨으로써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둘째는 이 재단이 만들어져 제대로 정착도 되기 전에 뿌리째 흔들리고 상태인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후 조치해야 되는 것들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두 가지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은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최종적으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비공개 의견이신 것이죠?

〈○○○ 위원〉

- 네, 지금은 비공개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서는 언젠가는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동일한 의견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시간적인 유예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5호 사유를 들어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후에 대한 의견은 차치하는 것이고요.

〈○○○ 위원〉

- 비공개할 때 5호로 비공개할 수도 있고 7호로 비공개할 수도 있는데 5호로 비공개하면 감사사항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직 심의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한

다는 뜻이어서 끝나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7호로 비공개 결정을 하면 그 감사가 끝나도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 위원님 말씀은 5호는 맞지만 7호는 아니다. 그래서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때는 공개를 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때 7호는 아니고 5호 비공개로 결정을 하자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

-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에서는 5호, 7호, 2개를 다 비공개 사유로 삼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사안에서 일단 5호로 비공개 사유를 정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우리가 7호가 아니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호로 비공개 사유로 삼고 감사결과가 종료되고 다시 그것을 만약에 청구인이 재청구를 했는데 해당 과나 감사위원회에서 비공개하면 그때 비공개 사유를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을 가지고 7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다시 공개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은 다시 해당 과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다시 어떤 형태로 진행될 지는 그 이후의 문제이지 여기서 5호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5호 사유로 비공개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요?
-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의견은 우리가 이 사건에서는 5호 사유로 비공개를 한다까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 다음에 다시 청구인의 대응방향과 해당과의 대응방향은 그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종료된 다음에 다시 차후에 논의될 문제지 여기서 그것을 미리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해당과 나 위원회에서 공개해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 위원〉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그때 되면 이 감사 결과가 나왔을 것이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심의회에서 7호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7호는 판단하지 않고 이미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5호만 판단하여 ‘공개해라’라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심의회에서 7호까지 다룬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5호로써는 공개를 해야 되지만 7호 사유로 경영상 비밀을 해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 만약에 7호 사유에 해당된다면 7호를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판단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토의를 해 보니 7호는 아니더라고 생각되어 5호만 비공개 사유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위원〉

- 대체적으로 5호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7호가 아니라는 결정은 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5호 사유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청구했을 때 과에서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적용할 지는 다시 과에서 다시 판단하고 그 판단을 위원회에서 다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감사위원회가 분명히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등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특별점검에 대한 얘기들을 공개를 하더라도 과연 나중에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그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시 민원을 신청하지 않을까. 그때 7호를 판단해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일부는 공개할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7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봐야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 이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전체가 4명 모두 5호 사유로 비공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것이니까, 그럼 본 사안은 5호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9-25호는 기각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안번호 2019-26 이의신청 】

안건명 : (2018. 8월 이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통보받은 처분 죄명  
및 통보결과에 따른 징계수위

<○○○ 위원>

○ 의안번호 제2019-26호 인사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소관부서 입장 )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팀장, 주무관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과 ○○○○팀장 ○○○입니다.

<○○○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사과 인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 주무관입니다.

<○○○ 위원>

○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9-26호 인사과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8년 8월 이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통보 받은 처분 죄명 및 통보결과에 따른 징계수위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는 해당 정보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며, 공개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인사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그 과정을 비공개하는 규정이며, 징계 결과는 당사자만이 아닌 소속부서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 검토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공개할 요구하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팀장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팀장〉

- 없습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제가 먼저 좀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우려하던 5건 중에서 ○○○ ○○○○ 관한 징계 건은 검찰에서 통보 받은 바는 없죠?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 청구인이 요구하는 검찰에서 통보 받은 죄명에 해당되는 징계 건은 4건이고요. 그래서 청구인 요청대로 만약에 공개를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 ○○. 2. ○○ ○○. 3. ○○ ○○ ○○. 4. ○○○○○○ ○ ○○ ○○.’ 이렇게 아마 공개할 것 같은데, 요청한 대로라면 맞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 ○○ ○, 이런 사고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알고 있습니까?

<○○○ 팀장>

○ 모릅니다. 주변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 위원>

○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도 아무도 모릅니까?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설령 ○○○○○○○○ ○○ ○○○ ○○○○ ○○ ○○○ 그것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리고 ○○○ ○○이기 때문에 이 ○○○ 대해서는 누구인지는 모르네요? ○○ ○○○ ○○○ ○○ ○○○ ○○○ ○○ ○○ ○○인지는 모르는 것이죠?

〈○○○ 주무관〉

○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 ○○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은 본인의 사례가 공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유사한 문제를 일으켰다 라는 것은 암암리에 내부직원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

○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이 비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도 되지 않습니까?

○ 일단 전산 관련되는 그 담당업무자가 또 있다면 그 업무자는 알 테고, 그 위에 과장이라든가, 그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이잖아요?

○ 그리고 검찰에서 통보 받는 과정에 있는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 주무관〉

○ 그렇죠.

<○○○ 위원>

- 그분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소문이 나서 혹시 그 정보까지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 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개 씨가 누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실제 업무담당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지만,

<○○○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주변에서 많이 알려졌습니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 주무관>

-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희 인사위원회에 징계 심의를 받으러 올 때 기본적으로 공가를 신청하고 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본인이 동료한테 이런 것을 고민을 얘기한다거나 하게 되면 알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 위원>

- 팀장님은 아까 잘 모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팀장>

-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업무라인 외에는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 위원>

- 사고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 팀장>

- 그렇죠.

<○○○ 위원>

- 징계 받고 이런 것을 물론 비밀이지만 그 사고가 났다는 것은 주변사람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 팀장>

-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부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해서 알려지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 ○○○○ ○○ ○○○○ ○○○ 그 부분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는 것은 맞죠?

<○○○ 주무관>

-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당연히 특정이 안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저희 시 직원이 한 1만 명 정도 되는데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이분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는 하더라고요.

<○○○ 위원>

- 조합해도 지금 ○○ ○○, ○○ ○○, ○○ ○○ ○○○○ ○○ ○○ ○○○○

○○ ○○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해도 알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지금 이게 2018년 8월 이후의 건인데 그 전 건까지 합치면 ○○ 같은 비위사실이 발생했을 때 징계수위가 ○○, ○○ ○○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나갈 수 있겠죠?

<○○○ 팀장>

○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적어도 ○○ ○○○ 대해서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 ○○ ○ 중에 어떤 것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 팀장>

○ 네, 저희가 우려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 ○○ 양태가 다양한데 이게 언론에 공개되고 다수의 사람들이 알게 됐을 경우에 ○○○ ○○ ○○○ ○○○ ○○ 경징계를 받는구나 그렇게 인식될 우려가 있고요.

<○○○ 위원>

○ 지금 묻는 것은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징계 받은 사람에 대한 유추가 가능한지, 특정인을 유추할 수가 있는지를 여쭙보는 것인데, ○○○○○○○○ ○○○ 경우에는 유추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 대해서는 일단 본질은 유추는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주무관〉

- 더 보충을 해 드리자면 ○○○ 각각 조사했던 분들도 여러 분인데 시기가 지금 2018년 8월 이후로 특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담당자가 A, B, C가 있다고 하면 A같은 경우에는 이 한 건에 대해서만 알지만 다른 건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건들이 공개되게 되면 나머지 조사하는 건들에 대한 결과를 옆에 분들도 아시게 되는 것이죠.

〈○○○ 위원〉

- 그래서 ○○ 중에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특정인이 특징이 안 된다고 치고, 그랬을 때 공개가 됐을 때 양정의 적정성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주무관〉

- 일단은 지금 이 청구권자가 요구하는 내용은 검찰에서 통보 받은 내용인데 원래 (최초) 청구내용은 ‘해당 처분이 징계 감경에서 제외되는 대상’인데 (이번 청구시) 그게 아닌 비위 중에서 직무랑 관련성이 없는 비위로 인한 징계 관련해서 처분 받은 내역을 바라면서 검찰에서 통보 받은 죄명,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징계 수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구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면 징계 양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비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희 징계절차랑 검찰에서 통보 받은 그 검찰 수사 결과의 내용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설령 검찰에서 어떤 형사처분이 강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징계를 안 하거나 또는 반대로 검찰에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징계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왜 이렇게 약한 처분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양정이라는 것이 죄명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양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 ○○ ○ ○○○ ○○○ ○○○ ○○○ ○○○ 무겁다, 가볍다 말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 시빗거리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그것을 말하면 통계에 불과한 것인데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까?

〈○○○ 팀장〉

-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아까와 연계선상인데요, ○○○○ ○○ ○○○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어, 모든 사람이나 언론이 인식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차후에 인사위원들은 인사위원회시 여기에 구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징계위원회에 있지만 징계위원회는 그런 것에 구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물론 참작사유는 되겠죠. 이런 사안에서 이렇게 징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동일한 사안이고, 그러면 같은 처분을 한다고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사유를 봐야 아는 것이죠. 절도 죄이기 때문에 뭐다, 이것은 전혀 고려사항은 아닌 것이고 절도의 내용을 봐야 되겠죠.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 제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모두 열린 마음으로 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것은 청구인이 왜 이런 정보를 청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주무관〉

- 그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일차적으로 드는 것이 보통의 경우에는 징계에 관해서 설명을 달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징계 받은 현안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수치로는 공개하고 있거든요.
-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유에 보시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5조2항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가 있을 경우에 징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이런 재량규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제정된 이후 시행 이후의 징계전수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 위원〉

- 2018년 8월 이후라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입니까?

〈○○○ 주무관〉

- 네, 그 제정 시행일 이후예요. 그래서 이 시행 법률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처벌이 됐느냐 내지는 처벌이 됐지 않느냐를 묻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전수로 공개를 할 때는 본인이 유사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해서 참고자료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처벌 받지 않은 건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건은 저희가 처벌 받지 않은 건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분은 반대로 처벌한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위와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주변에 유사한 건이 진행될 때 자료로 제공하려고 하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들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사실 하나의 서울시 사례가 표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심사기준을 보면 저희가 일반기준이 있고 개별기준이 있는데, 일반기준 같은 경우에는 징계 재량의 범위를 많이 넓혀두고 됩니다. 그래서 비위 정도라든지 과실 유무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중한 경우, 비위가 중하고 고의가 경과실인 경우 등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나머지 사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견책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법 위반인데 견책이다.’

실질로 ○○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국회에 건수로만 나간 것이 있는데 국회의원님이 얘기하시기를 ‘어떻게 공무원이 ○○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였는데 사안들이 대부분의 경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유실물인지 알고, 물론 당사자의 변명일 수도 있지만 유실물인지 알고 가져갔다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즉시 반납을 한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형법상으로 치면 일단 가져갔을 때 바로 절도가 되어 버리고 벌금이 나오는데 당시에 우리는 반납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합의를 하고, 어쨌든 분실됐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변상을 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통보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 위원〉

○ 주무관님 말씀의 요지는 그게 죄명은 무겁지만 징계는 실제 가벼운 징계가 정당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서울시의 포준사례가 되면서 이분이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지 우려가 됩니다.

<○○○ 위원>

- 그럼 여기 요청 정보가 처분 죄명이 ‘징계 수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에 공개를 하면 그냥 여기서도 ‘검찰의 처분 죄명 및 징계수위’니까 나머지 다 빼고 그냥 ○○, 그러니까 처분 죄명은 ○○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 ○○, ○○ ○○.’ 이렇게만 지금 나가게 되는 것이죠?

<○○○ 팀장>

- 만약에 나가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그것도 처분 죄명이니까 처분 죄명하고 그에 따른 징계수위만 딱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여주신 거에는 똑같은 절도여도 그 절도 사안이 경하고 중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일련의 약간의 표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 ○○○ ○○○ ○ ○○○○ ○○○○ ○○○ ○○○○거나 이런 것들

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붙어서 같이 공개가 된다면 이렇게 징계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일련의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정이 같이 공개가 되는 것이어서 우려하시는 사안들이 좀 희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 주무관〉

○ 사실 그렇게 되면 특정의 가능성이 좀 높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 위원〉

○ 그런데 당사자 특정문제는 사안이 ○○○○○○ ○○○ ○ ○○○ ○○○ ‘○○ ○ ○○○ ○. ○○ ○○○○.’, 예를 들면 처분 죄명하고 처분내역하고 그렇게 만 나간다고 해도 특정이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조금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 팀장〉

○ 아닙니다. 검찰 통보내용이 ○○○○○○ ○○ ○○○ ○○○ ○○, ○○○○○○ ○ ○○○○○○.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의 것을 많이 참작을 해 가지고 내린 결론인데요, 차후에는 그러면 이것이 공개됐을 경우에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 ○○, 아니면 ○○○○○○ 무조건 ○○○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기구속의 원리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께서 그 양형에 대해서,

〈○○○ 위원〉

○ 부담을 가지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공개여부랑 상관없이 ‘○○○ ○○ ○○○ ○○○ ○○○ ○○○ ○○.’, 이런 것은 고려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 팀장〉

- 물론 기준 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관련법규에 의해서 기준 양정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사위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께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 주무관〉

-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유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징계절차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형사처분보다 내부적으로 징계처분 받는 것을 훨씬 몸으로 느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도 어떤 형벌의 한 종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몸으로 직접 느끼시지는 못하지만 의외로 징계처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 게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앞으로 상훈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승진이나 임용에서 일단 제한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유사하게 이런 게 지금 계류되어 부분들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면 본인은 왜 유사한데 더 강하게 처벌을 받았냐라고 해서 또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고요.

이 건들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검찰에서 통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직접 제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피해자에게도 결과 통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어떤 문제가 됐던 공무원을 징계해 달라고 제보를 했지만

피해자에게 전혀 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조금 보충질문을 하면 비공개 사유로 1항1호하고 1항5호를 들고 있는데 요, 1항1호는 지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이것을 전제로 1호를 들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회의 비공개에 관한 것이니까 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주무관〉

- 회의 비공개 규정을 자세히 보면 1, 2, 3, 4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4호에도 보면 기타 위원회의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지금 해석하시는 것이 과정에 한해서 비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결과의 내용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의 시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이미 이루어진 결과이지만 비공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비공개 규정에 4호에 해당한다고 보여져서 그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 위원〉

- 5호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5호는 일단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1호는, 회의의 비공개는, 이렇게 때문에 회의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회의 결과 문제까지 하고 있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적용해 오셨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면복권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민생사범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이 기록은 남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 팀장〉

○ 그런데 말소가 되기는 합니다. 저희가 해 가지고 인사기록에서 말소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기록 자체는 말소 자체의 그 기록까지 남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엑셀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말소됐다는 결과까지 적으실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 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기록 보존기간이 지나서 말소가 돼도 만약에 동일인이 유사한 사건으로 다시 재징계에 회부가 됐을 때는 기존의 징계 받아서 말소된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재양정 사례에서 참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례를 참작해서 다시 양정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팀장〉

○ 덧붙여 가지고, 말소가 된다 하더라도 퇴직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징계를 받게 되면 정부 포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

- 그것은 본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니까 나중 문제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분들이 어쨌든 처벌을 받고서 그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는데 지금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주무관〉

- 실제로 이 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성희롱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감경에서 제외되는, 어떤 다른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극단적으로 보통의 경우 혐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은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

-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통계수치가 너무 적어서 2가지 염려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이게 객관적으로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하나는 아까 인사과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전체적인 것이 아닌데 마치 모든 사건의 표준처럼 오인될 그런 염려 때문에 인사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죄명이라도 이게 다양한 한 서너 개의 차별적인 결과가 나온 통계면 이게 사안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로 통계 자체가 읽힐 텐데 그냥 이것은 딱 하나에 대해서 하나만 하면 ‘이것은 이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읽힐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 주무관〉

- 그리고 이게 시행된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이분이 일반적으로 이 법 시행 이후에 적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시행된지 지금 한 6, 7개월 안 된 것에 관한 통계라면 그것을 일반화하기에는 굉장히 사례가 적은 수에 해당하는 면이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징계에 관련된 사안은 9조1항1호를 이유로 거부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9조1항1호에서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이것을 적용해서요?

〈○○○ 팀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의 11조가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서 정보공개에 관해서 위임을 한 규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주무관〉

- 정보공개로 특정하지는 않고 지방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의 하위규정입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위규정으로서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지 1호의 법령에서 정한 것이라는 그 법령이라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해서 위임한 그 법령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처럼 그냥 하위법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비공개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일단 정보공개에 대해서 위임을 해서 정한 것은 아니죠?

<○○○ 주무관>

○ 정보공개로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보공개에 관한 위임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이 정보공개의 위임을 안 했는데 하위규정에서 정보공개에 관해서 비공개를 규정하는 것이 비공개의 근거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1호가 아니더라도 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5호 문제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공무원법 관련규정 이런 것을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법리적인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8월 이후에는 아까 첨부자료에 나오듯이 지금 5건인데 주로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마치 이런 죄명에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기준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업무에 앞으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라는 견해이신 것이죠?

<○○○ 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딱 개인을 특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샘플이 적어서 어느 정도 거기에 관련돼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런 처벌을 받고 징계는 이런 징계를 받았구나.’를 다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징계 계류에 올라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징계 진행에 대해서 민감하신 것이 본인들은 위원이 누가 섭외됐는지 짐작하려 하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징계 일시나 장소들도 다 전체적으로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꺾어보면 오히려 어떤 징계처분은 내부적인 행정절차이고 외부 검찰 통보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형벌형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심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징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 징계는 앞으로 향후 공무원 생활에서도 중요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자신의 이 청구 자체가 공익적 목적임을 조금 더 소명을 한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청구서에서 청구인이 ‘내가 왜 이 정보를 청구하려 한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팀장>

- 없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소관부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팀장>

○ 감사합니다.

( 소관부서 퇴장 )

<○○○ 위원>

○ 약간 정리를 하면 1호 사유는 안 되는 것 같죠?

<○○○ 위원>

○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위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일반운영에 관한 위임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호 사유는 해당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원법 72조를 들고 있는데 72조에서 전혀 정보공개에 관한 위임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 조항에 근거해서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1호는 제외하고요.

<○○○ 위원>

○ 저는 일단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 먼저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첫째로는 이게 다른 자료정보와 결합하면 징계자에 대해서 유추가 가능한가부터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래도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견책 받았구나. 아무개 씨가 견책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6호에 따라서 개인정보로 봐서 비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합해서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관이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그러는 이상 아까 팀장은 거의 일반론으로 말하

는 것이라고 정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주변에 지금 아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6호에 따라서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처분이 대상이 특정이 안 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징계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위원님 말씀처럼 샘플이 적다보니까 특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 ○○○○ ○○○○○ ○○ ○○○ 이 정도로 특정하면 이것도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부분공개 할 것이 아니라 다 비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장하는 5호 사유의 경우에도 만약에 특정이 안 된다면 단지 통계에 불과하게 되고, 통계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를 해 오고 있고, 비리내용이나 징계수위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간 예도 있고, 법원의 판례도 공개를 하고 있고, 통계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고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양형의 적정성을 해칠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징계사유를 알아야 양형의 적정성도 판단이 가능한데 죄명만 갖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성을 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징계위원회에서는 죄명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고 어떤 비위인지, 얼마인지, 이것까지 봐야 비로소 선례에 구속이 되는 것이지 ○○○○ 죄명만 갖고는 구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시비가 걸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부터 먼저 정하면 저는 통계적인 의미보다도 샘플이 너무 적어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징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은 6호에 의해서 비공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그런데 만약에 나간다면 1호는 아니니까 제외하고 5호, 6호 이렇게 해서 나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 이 사건은 2가지 측면에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공개되어 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게 될지, 이 2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 사건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분 죄명하고 징계의 수위만 공개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조군이 너무 적어서 특정될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 ○○ ○○○ ○○○ ○○, 그런 샘플군들이 또 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죄명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받았더라는 것만 가지고 어떤 당사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직접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약간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어쨌든 이 사건에 내부적으로 다양한 고려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인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고 공개되거나 혹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그런 징계수위를 결정하시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크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단순히 처분 죄명에 따라서 어떤 징계를 받는지, 이 건이 5호 사유로 구성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우선은 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 ○○○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위원>

○ 사실 누가 ○○○○○○○○ ○○○ 했는지에 대해서 주변에 알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을 이 사람이 그런 범죄로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 그래서 관계되어 있는지도 물어보니까, 물론 ‘처벌 가능’ 이런 것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위원>

○ 그런 것도 충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이런 특정 케이스만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비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에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은 어떤 범죄에 어떤 정도의 형벌이면 어떤 징계의 어떤 범위 안에서 징계를 하는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통계적인 정보로서도 의미를 같이 갖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 위원님은 공개 의견이신 것이죠?

<○○○ 위원>

○ 네.

<○○○ 위원>

○ 전체를 통계로 보시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위원〉

○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는 4개잖아요. 4개의 샘플인데 실제로 사례의 수는 ○개죠. 그러니까 ○○○ ○○ ○○, ○○○○○○○○ ○○○○○ ○○, 그리고 ○○○ ○○ ○○ ○○○, 딱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 일단 이 징계를 받은 분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하고 승진에서 누락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이게 개인정보의 공개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게 알려지게 되면 공개는 될 것 같습니다. ○○ ○○○, 그다음에 ○○○○○○○○ ○○이라는 게 결국은 무슨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벌금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

○ 저는 이 사안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봅니다. 다른 사례에서 공개를 한 이유는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지만 개인이 특정될 염려가 적고, 공개한 사안에서는 그 청구인이 학문적,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공익적 활용용도를 청구인이 특정한 것도 아니고, 또 이 자체가 여전히 6호의 개인 특정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샘플이 지나치게 적어서 인사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공개 의견을 내겠습니다.

<○○○ 위원>

- 어쨌든 이분들이 자기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불이익을 받은 다음에 어쨌든 지금은 다시 어떤 개인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5호 사유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6호 사유라는 것은 이 샘플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공개가 될 경우 개인이 특정되어 본인이 회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권 침해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샘플이 많다면 정말 아무 고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샘플을 가지고 공개를 해서 결국은 누군가를 특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5호 사유였는데 두 분은 5호 사유가 안 된다는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5호 사유는 제외하고, 부서에 서는 1호, 5호를 사유로 했지만 사례가 적어서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어서 6호의 사유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님은 공개 의견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이 의견이 갈리는 것이 당연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우리 위원회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법리에 대해서는 의견은 같고, 다만 사실 인정 부분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요.

<○○○ 위원>

- 정리하겠습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4명 중 3명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9-26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

○ 이것으로 제6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일동〉

○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1분, 회의 종료】